

군산시 공고 제 2015-552호

「군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4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산시 사무전결 처리사항 중 건축허가 관련 사무전결 처리사항에 대한 전결권 상향조정을 통해 사전 신중한 의사결정으로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사무의 신중한 의사결정 처리와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결권자 조정(안 별표)

- 건축과 전결사무 단위업무 중 “건축허가, 건축허가변경, (임시)사용승인” 전결사무를 연면적 및 층수별로 세분화하고 전결범위를 상향 조정

▶ 건축허가·건축허가변경·(임시)사용승인 전결사항

연면적 및 층수별 기준		전결권자	비고
4층이하	500㎡미만	계 장	
	500~1,000㎡미만	과 장	
	1,000~2,000㎡미만	국 장	
	2,000㎡이상	부시장	
5층 이상		부시장	

➤ 건축공사로 인한 중요민원처리(다수관련민원) : 부시장전결

나. 전결권자 명칭 변경 : 담당 ⇒ 계장으로 변경(안 별표)

3. 의견제출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4월 27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1)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번 군산시청 총무과
- 2) 군산시청 총무과 ☎ 454-2244, FAX 454-222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 시정계 담당자 강현진(☎ 454-224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군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군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건축과 사무전결 처리사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군산시 사무의 전결사항

부서명	일련 번호	사무내용	전결권자					시장
			담당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실무자	계장				
건축과	18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협의포함) 등 ※ 증축의 경우 증축분만 적용						
		가. 4층이하 건축물 건축허가, 건축허가변경,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 연면적 500㎡미만	기안	○				
		- 연면적 500~1,000㎡미만	기안		○			
		- 연면적 1,000~2,000㎡미만	기안			○		
		- 연면적 2,000㎡이상	기안				○	
		나. 5층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건축허가변경,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기안				○	
		다. 건축지도원 임명	기안		○			
		라. 건축공사 관련자 변경 신고수리	기안	○				
		마. 건축물 용도변경신고 및 사용승인	기안	○				
바. 건축공사로 인한 중요민원처리(다수관련민원)	기안				○			
사. 건축공사로 인한 일반 민원처리	기안		○					
아. 건축민원1회 방문협의	기안	○						

군산시 공고 제2015 - 624호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04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 마련
-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의 성장과 재생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기성 시가지와 신도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 나. 센터의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과 채용기간 등을 정함 (안 제3조)
- 다. 센터장과 직원의 보수 및 수당 지급시기와 지급기준을 정함 (안 제4조)
- 라.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 마. 도시재생전문가 활용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
- 바. 주민제안·공모사업에 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정함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5월 6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 (1) 주소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군산시청 도시계획과(도시재생선도지역팀)

- (2) 전화 : 063-454-3488 (FAX 063-452-8171)

- (3) 전자메일 : bigbang3k@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 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선도지역팀(전화 063-454-348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구성) ①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필요한 인력은 센터장 1명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 팀장, 사무원 등을 포함한 센터 직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센터 직원의 채용) ① 센터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을 거쳐 서류심사와 면접평가방식을 통해 채용한다.

② 직원은 채용 공고 시 자격기준을 정하여 선정 채용한다.

③ 직원의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군산시 취업규칙」 제9조제2항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제6조에 따라 해고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조(센터 직원의 보수) 센터장과 직원의 보수 및 수당의 지급시기와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시기 : 매월 20일로 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

2. 보수의 지급기준 : 다음 각 목의 기준으로 지급하되 시간외 근무수당, 관외여비를 별도 지급할 수 있다.

가. 센터장 : 연봉 4,000만원이상 4,500만원이하의 범위내

나. 사무국장 : 연봉 3,500만원이상 4,000만원이하의 범위내

다. 팀장 : 연봉 3,000만원이상 3,500만원이하의 범위내

라. 사무원 등 : 연봉 2,000만원이상 2,500만원이하의 범위내

3. 시장은 직원의 보수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직원의 복무)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군산시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징계 등) ① 시장은 센터 직원에 대하여 「군산시 취업규칙」을 준용하여 징계(“해고”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 할 때에는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야 한다.

② 센터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무국과 분야별 사업팀을 둘 수 있다.

③ 센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수탁법인이나 단체는 매년 9월말까지 다음 년도 사업 계획서와 소요 예산을 시장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센터의 감사) ①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 할 경우 수탁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센터의 운영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위탁시 적용 배제) 시장이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센터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 할 때에는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기타)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11조(도시재생전문가 활용 비용)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도시재생전문가 활용비용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5-1-4(전문가등 활용비용)에 따라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12조(주민제안·공모사업)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제안사업, 주민공모사업(이하 “제안사업”, “공모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군산시 도시재생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간의 교류활성화, 갈등해소를 위해 주민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추진하는 사업
2.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수요에 기반을 둔 문화, 복지,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
3. 마을에 대한 관심과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
4. 마을의 역사성, 장소성을 살린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3조(지원신청) ① 제안·공모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공모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최소 20명 이상 주민이 참여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최소 3명 이상 공동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선정심사 및 통지) ① 제안·공모사업 선정 심사는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생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할 수 있다.

② 선정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

2. 지원 사업비 산출 기초 적정성 여부

3. 추진 주체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시의 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위원회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한 후 사업의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의한 결과를 5일 이내에 제안사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 내용의 변경) 제안·공모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절차는 제14조를 따른다.

제16조(전문가 등의 자문) 시장은 제안·공모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가 또는 단체, 기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사업비의 집행) ① 제안·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민은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관계법령과 보조금 지원 결정내용 및 조건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안·공모사업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융자의 조건)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기간은 3년으로 하며 상환기간내는 무이자로 한다.

② 상환기간 경과 후 이율 및 연체이자는 군산시 금고 금리를 적용한다.

부칙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단체구성원	명	연 락 처	
주 소			
이 메 일			
주요 활동 이 력	* 최근 5년 이내 관련 활동내용을 적어주세요.		
사 업 명		제안분야	
사 업 목 적	○		
사 업 기 간	20 . . . ~ 20 . . .		
사 업 위 치			
사 업 내 용	○ ○ ○		
사 업 비 (예산계획)			

위와 같이 『20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기관명 / 대표자 :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도시재생사업 주민공모사업 신청서

모임명		대표자	
모임구성원	명	연락처	
모임대표자	성명	연락처	
주소			
제안자 1	성명	연락처	
주소			
제안자 2	성명	연락처	
주소			
사업명		공모분야	
사업목적	○		
사업기간	20 . . . ~ 20 . . .		
사업위치			
사업내용	○ ○ ○		
사업비 (예산계획)			

위와 같이 『20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주민 모임명 (대표자) : (인)
제안자 1 : (인)
제안자 2 : (인)

군산시장 귀하

군산시 고시 제 2015 - 59 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8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04. 02.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군산 조촌동센트럴파크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변경없음)

가. 지역주택조합

- 1) 명 칭 : 센트럴파크지역주택조합
- 2) 조합장 : 강 갑 종
- 3)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변영로 196

나. 공동사업주체

- 1) 명 칭 : 주식회사 제일건설
- 2) 대표자 : 윤 여 응
- 3)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124 (중양동2가)

3. 사업내용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769-4번지의외 9필지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

나. 대지면적 : 9,356.7000m²

다. 건축면적 : 6,536.5125m²

라. 연 면 적 : 78,614.3805m²

마. 건축규모 : 아파트 4동 36층, 480세대

- 전용 84.8869m² 251세대

- 전용 84.9963m² 229세대

바.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사. 사업비 : 111,274,477천원

아. 사업기간(변경) :

1) 당초 : 2013년 12월 16일 ~ 2016년 12월 15일

2) 변경 : 2013년 12월 16일 ~ 2017년 03월 31일

4. 사업계획 주요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사업기간	2013.12.16~2016.12.15	2013.12.16~2017.03.31	
기타 변경사항	1. 단위세대내 구획 벽체 변경(조적 ⇒철근콘크리트) 2. 단위세대 창호 규격 변경 등 기타 변경사항		

5. 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15. 04. 01.

6. 설계도서 : 변경승인설계도서와 같음

7. 주택법 제17조 1항에 의한 고시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8.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1-3호선 외 3개노선)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 1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 청(도시계획과 454-353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조촌동 769-4번지 외 6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명칭 : 군산 조촌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대로1-3호선 외 3개 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구분	노선명			결정조서		기개설조서		금회시행조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개설폭원 (m)	연장 (m)	개설폭원 (m)	연장 (m)	면적 (㎡)	
도로	대로	1	3	35~38	2,090	35	2,090	3	106	273.6	확폭구간 개설
	소로	2	255	8	114	8	114	-	-	11.6	가각변경구간 개설
	소로	3	245	6~10	92	6	92	4	56	217.0	확폭구간 개설
	소로	3	4-88	4~6	414	4	414	2	117	178.3	확폭구간 개설
계	4개노선				2,710		2,710		279	680.5	

4. 사업시행자(변경)

가. 당초 : 전라북도 군산시 변영로 196(조촌동), 코오롱 지역주택조합 대표자 강갑중

나. 변경 : 전라북도 군산시 변영로 196(조촌동), 센트럴파크지역주택조합 대표자 강갑중
익산시 익산대로 124(중양동2가), 주식회사 제일건설 대표자 윤여웅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가. 당초 : 2013.12.01. ~ 2016.11.31.

나. 변경 : 2013.12.01. ~ 2017.03.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조서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 실음생략

8.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붙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변경없음)

○ 대로1-3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군산시 조촌동	769-1	대	558.1	59.2	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	군산시 번영로 188-19(조촌동)	주식회사 예스저축은행	군산시 나운2길58(나운동)	근저당	
								주식회사 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근저당	
2	군산시 조촌동	769-2	대	605.0	64.0	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	군산시 번영로 188-19(조촌동)	주식회사 예스저축은행	군산시 나운2길58(나운동)	근저당	
								주식회사 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근저당	
3	군산시 조촌동	769-4	대	1,510.2	86.8	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	군산시 번영로 188-19(조촌동)	주식회사 예스저축은행	군산시 나운2길58(나운동)	근저당	
								주식회사 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근저당	
4	군산시 조촌동	769-5	대	1,172.7	63.6	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	군산시 번영로 188-19(조촌동)	주식회사 예스저축은행	군산시 나운2길58(나운동)	근저당	
								주식회사 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근저당	
계	4필지			3,846.0	273.6						

○ 소로2-255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군산시 조촌동	768-1	대	2,453.9	9.0	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	군산시 번영로 188-19(조촌동)	주식회사 예스저축은행	군산시 나운2길58(나운동)	근저당	
								주식회사 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근저당	
2	군산시 조촌동	769-1	대	558.1	2.6	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	군산시 번영로 188-19(조촌동)	주식회사 예스저축은행	군산시 나운2길58(나운동)	근저당	
								주식회사 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근저당	
계	2필지			3,012.0	11.6						

○ 소로3-245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군산시 조촌동	768- 2	대	1,593.4	4.4	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	군산시 번영로 188-19(조촌동)	주식회사 에스저축은행	군산시 나운2길58(나운동)	근저당	
								주식회사 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근저당	
2	군산시 조촌동	769- 5	대	1,172.7	197.7	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	군산시 번영로 188-19(조촌동)	주식회사 에스저축은행	군산시 나운2길58(나운동)	근저당	
								주식회사 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근저당	
3	군산시 조촌동	813	도	365.3	14.9	군산시					
계	3필지			3,131.4	217.0						

○ 소로3-4-88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군산시 조촌동	768- 2	대	2,453.9	84.1	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	군산시 번영로 188-19(조촌동)	주식회사 에스저축은행	군산시 나운2길58(나운동)	근저당	
								주식회사 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근저당	
2	군산시 조촌동	769- 5	대	1,593.4	94.2	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	군산시 번영로 188-19(조촌동)	주식회사 에스저축은행	군산시 나운2길58(나운동)	근저당	
								주식회사 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근저당	
계	2필지			4,047.3	178.3						

군산시 고시 제2015-60호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승인·고시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을 위하여 군산시고시 제2014-141(2014.12.26) 호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동 승인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5년 4월 10일

I.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신설	48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군산시 조촌동 2번지 일대	-	증)596,163	596,163	군산고141('14.12.26)	

②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96,163	-	596,163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21	증) 3,314	3,935	0.7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348,423	348,423	58.5	-
	준주거지역	-	증) 84,810	84,810	14.2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증) 105,721	105,721	17.7	-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595,542	감) 595,542	-	-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증) 53,274	53,274	8.9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도로총괄표

유 별	합계			1류			2류			3류		
	노 수	선 연장 (m)	면적 (㎡)	노 수	선 연장 (m)	면적 (㎡)	노 수	선 연장 (m)	면적 (㎡)	노 수	선 연장 (m)	면적 (㎡)
합 계	26	22,296 (7,059)	634,584 (127,859)	3	6,982 (832)	237,453 (19,362)	9	9,855 (2,789)	268,705 (42,502)	14	5,459 (3,438)	128,426 (65,995)
대 로	5	18,484 (3,247)	572,378 (69,139)	1	6,314 (164)	221,416 (3,325)	1	7,790 (724)	234,417 (11,700)	3	4,380 (2,359)	116,545 (54,114)
중 로	13	3,610 (3,610)	60,955 (57,469)	2	668 (668)	16,037 (16,037)	8	2,065 (2,065)	34,288 (30,802)	3	877 (877)	10,630 (10,630)
소 로	8	202 (202)	1,251 (1,251)	-	-	-	-	-	-	8	202 (202)	1,251 (1,251)

※ ()안의 면적은 대상지내 연장 및 면적임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 과 지	최 초 결 정 일	비 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기 정	대 로	1	4	35	주 간 선 도 로	6,314 (164)	조 촌 동 대 1-1	광 2-2 유 원 지 구 역 계	일 반 도 로	-	건 고 228 (‘86.5.23)	-
변 경	대 로	1	4	35~ 38	주 간 선 도 로	6,314 (164)	조 촌 동 대 1-1	광 2-2 유 원 지 구 역 계	일 반 도 로	-	-	-
기 정	대 로	2	4	30	보 조 간 선 도 로	7,790 (724)	경 암 동 3 호 광 장	여 방 리 10 호 광 장	일 반 도 로	6 호 광 장	건 고 228 (‘86.5.23)	-
변 경	대 로	2	4	30~ 33	보 조 간 선 도 로	7,790 (724)	경 암 동 3 호 광 장	여 방 리 10 호 광 장	일 반 도 로	6 광 장	-	-
기 정	대 로	3	6	25	보 조 간 선 도 로	2,915 (894)	경 장 동 대 1-3	구 암 동 대 2-4	일 반 도 로	6 토 지 구 획	건 고 525 (‘67.7.25)	-
변 경	대 로	3	6	25~ 28	보 조 간 선 도 로	2,915 (894)	경 장 동 대 1-3	구 암 동 대 2-4	일 반 도 로	6 토 지 구 획	-	-
기 정	중 로	2	65	15	집 산 도 로	580 (580)	구 암 동 대 2-4	조 촌 동 대 3-6	일 반 도 로	-	군 산 고 242 (2003.4)	-
변 경	중 로	2	65	17~ 20	집 산 도 로	580 (580)	구 암 동 대 2-4	조 촌 동 대 3-6	일 반 도 로	-	-	-

(계 속)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신설	대로	3	47	25~ 31	보조 간선 도로	715 (715)	대로3-6	대로2-4	일반 도로	-	-	-
신설	대로	3	48	25~ 31	보조 간선 도로	750 (750)	중로2-65	조촌동 664번지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1	119	23	집산 도로	142 (142)	대로3-6	중로2-143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1	120	21~ 27	집산 도로	526 (526)	중로2-143	대로2-4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2	142	15	집산 도로	290 (290)	중로1-120	대로3-47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2	143	15	집산 도로	848 (848)	중로2-65	대로1-4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2	144	15	집산 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2	145	15	집산 도로	79 (79)	중로1-119	중로3-76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2	146	15	집산 도로	25 (25)	중로3-76	대로3-47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2	147	15	집산 도로	92 (92)	대로3-47	중로2-148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2	148	15	집산 도로	129 (129)	대로3-6	중로2-143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3	74	12	국지 도로	49 (49)	중로2-142	문화시설 용지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3	75	12	국지 도로	231 (231)	중로2-142	중로2-142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3	76	12	국지 도로	597 (597)	중로2-145	중로2-145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3	773	7	국지 도로	40 (40)	주차장90	중로2-147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3	774	6	특수 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보행자 전용도로	-	-	-
신설	소로	3	775	6	특수 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보행자 전용도로	-	-	-
신설	소로	3	776	6	특수 도로	29 (29)	공공공지33	중로3-76	보행자 전용도로	-	-	-
신설	소로	3	777	6	특수 도로	29 (29)	중로3-76	공공공지33	보행자 전용도로	-	-	-
신설	소로	3	778	6	특수 도로	20 (20)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도로	-	-	-
신설	소로	3	779	6	특수 도로	20 (20)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도로	-	-	-
신설	소로	3	780	6	특수 도로	20 (20)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도로	-	-	-

※ ()안의 면적은 대상지내 연장임

(2) 주차장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87	주차장	조촌동 2	-	증) 701	701	-	-
신설	88	주차장	조촌동 2	-	증) 2,174	2,174	-	-
신설	89	주차장	조촌동 2	-	증) 2,043	2,043	-	'-
신설	90	주차장	조촌동 2	-	증) 1,849	1,849	-	'-

나. 공간시설

(1) 광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2	광장	근린광장	조촌동 474-3	-	증) 3,042	3,042	-	-

(2) 공공공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3	공공공지	-	조촌동 2	-	증) 3,034	3,034	-	-

(3) 녹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3	공업지역변	완충녹지	세풍제지 남측(대3-6번)	27,900	감) 27,900	-	건고228 (‘86.5.23)	-
신설	108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대2-4번)	-	증) 3,857	3,857	-	-
신설	109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대2-4번)	-	증) 2,549	2,549	-	-
신설	110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중2-65번)	-	증) 3,955	3,955	-	-
신설	111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중2-65번)	-	증) 1,863	1,863	-	-
신설	112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대3-6번)	-	증) 4,041	4,041	-	-
신설	113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대1-4번)	-	증) 1,865	1,865	-	-
신설	114	녹지	완충녹지	구암천변	-	증) 3,220	3,220	-	-
신설	115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 450-15대	-	증) 2,390	2,390	-	-
신설	116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중2-143번)	-	증) 766	766	-	-
신설	117	녹지	연결녹지	조촌동(대3-47번)	-	증) 4,589	4,589	-	-

(4) 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4	공원	근린공원	조촌동 2	-	증) 27,530	27,530	-	-
신설	91	공원	어린이공원	조촌동 2	-	증) 3,264	3,264	-	-
신설	92	공원	어린이공원	조촌동 2	-	증) 2,411	2,411	-	-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1	발전시설	조촌동 41번지외 1필 지	3,890	감) 3,890	-	전북고107 (‘08.05.16)	-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76	학교	초등학교	조촌동 2	-	증) 12,500	12,500	-	-
신설	77	학교	초등학교	조촌동 2	-	증) 13,586	13,586	-	-
신설	42	학교	중학교	조촌동 2	-	증) 12,000	12,000	-	-
신설	7	학교	유치원	조촌동 2	-	증) 3,523	3,523	-	-
신설	8	학교	유치원	조촌동 2	-	증) 3,533	3,533	-	-

(2) 공공청사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9	공공청사1	공공청사	조촌동 2	-	증) 752	752	-	-
신설	20	공공청사2	공공청사	조촌동 2	-	증) 744	744	-	-

②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A1	-	36,974	조촌동 2번지 일원	36,974	공동주택
A2	-	60,793	조촌동 2번지 일원	60,793	공동주택
A3	-	21,053	조촌동 2번지 일원	21,053	공동주택
A4	-	43,775	조촌동 41-16번지 일원	43,775	공동주택
A5	-	36,977	조촌동 2번지 일원	36,977	공동주택
A6	-	56,506	조촌동 2번지 일원	56,506	공동주택

나. 상업용지

- 획지간 합병은 인접 획지간 남북 또는 동서측으로 1회에 한하여 합병가능
- 획지분할은 획지분할가능선으로 지정된 대지에 한하여 획지분할이 가능하며, 획지분할가능선을 다르게 분할하고자 할 경우 획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획지면적의 30%범위 이내에서 변경이 가능함
- 획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획지는 획지분할가능선간 합병은 가능함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B1	-	20,583	조촌동 450-13번지 일원	20,583	2개획지 분할 가능
B2	-	2,513	조촌동 2번지	2,513	4개획지 분할 가능
B3	-	2,693	조촌동 2번지	2,693	4개획지 분할 가능
B4	-	1,694	조촌동 2번지	1,694	4개획지 분할 가능
B5	-	1,694	조촌동 2번지	1,694	4개획지 분할 가능
B6	-	756	조촌동 2번지	756	-
B7	-	765	조촌동 2번지	765	-
B8	-	548	조촌동 2번지	548	-
B9	-	548	조촌동 2번지	548	-
B10	-	548	조촌동 2번지	548	-
B11	-	530	조촌동 2번지	530	-
B12	-	690	조촌동 2번지	690	-
B13	-	699	조촌동 2번지	699	-
B14	-	699	조촌동 2번지	699	-
B15	-	699	조촌동 2번지	699	-
B16	-	699	조촌동 2번지	699	-
B17	-	699	조촌동 2번지	699	-
B18	-	699	조촌동 2번지	699	-
B19	-	690	조촌동 2번지	690	-
B20	-	690	조촌동 2번지	690	-
B21	-	699	조촌동 2번지	699	-
B22	-	699	조촌동 2번지	699	-

(계 속)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B23	-	699	조촌동 2번지	699	-
B24	-	699	조촌동 2번지	699	-
B25	-	699	조촌동 2번지	699	-
B26	-	699	조촌동 2번지	699	-
B27	-	690	조촌동 2번지	690	-
B28	-	708	조촌동 2번지	708	-
B29	-	743	조촌동 2번지 일원	743	-
B30	-	509	조촌동 2번지 일원	509	-
B31	-	510	조촌동 2번지 일원	510	-
B32	-	509	조촌동 2번지 일원	509	-
B33	-	509	조촌동 2번지 일원	509	-
B34	-	5,314	조촌동 41번지 일원	5,314	2개획지 분할 가능
B35	-	3,369	조촌동 41번지 일원	3,369	-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²)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m ²)	
C1	-	4,573	1	조촌동 2	701	-
			2	조촌동 2	617	
			3	조촌동 2	664	
			4	조촌동 2	655	
			5	조촌동 2	617	
			6	조촌동 2	664	
			7	조촌동 2	655	
C2	-	2,368	1	조촌동 2	469	-
			2	조촌동 2	479	
			3	조촌동 2	479	
			4	조촌동 2	479	
			5	조촌동 2	462	

라. 기타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D	-	8,265	조촌동 450-15번지 일원	8,265	-

마. 학교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E1	-	12,500	조촌동 2번지	12,500	-
E2	-	12,000	조촌동 2번지	12,000	-
E3	-	13,586	조촌동 2번지	13,586	-

바. 유치원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F1	-	3,523	조촌동 2번지	3,523	
F2	-	3,533	조촌동 2번지	3,533	

사. 문화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G	-	2,176	조촌동 2번지	2,176	-

아. 공공청사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H	-	752	1	조촌동 2번지	752	-
	-	744	2	조촌동 2번지	744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높이·배치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1)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1,A2, A3,A4, A5	-	용도	허용용도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층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조 및 조망권 확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남동 및 남서향 위주의 배치유도 개방감, 단지내 경관증진을 위해 다양한 층수의 주동배치로 단지내 변화 및 리듬감 유도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의 지붕은 평지붕, 경사지붕 등을 권장하며 과도한 옥탑 건축물은 지양 공동주택의 외관 및 입면은 계획구역의 입지를 고려한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저층부·중층부·고층부로 구분하여 마감재 및 입면 디자인의 변화 유도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색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기조색을 white 중심의 무채색계열과 B, PB, YR, YG 계열 중심으로 사용 보조색은 기조색과 동색계열 중 2-3차 혼합색으로 하여 안정되고 고상한 색감 연출 초점경관으로서 인지성이나 시각적 충격을 연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색이나 강조색을 활용한 다색대비나 색상대비를 통하여 다양성을 연출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부 : 6m이격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6	-	용도	허용용도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층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조 및 조망권 확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남동 및 남서향 위주의 배치유도 개방감, 단지내 경관증진을 위해 다양한 층수의 주동배치로 단지내 변화 및 리듬감 유도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의 지붕은 평지붕, 경사지붕 등을 권장하며 과도한 옥탑 건축물은 지양 공동주택의 외관 및 입면은 계획구역의 입지를 고려한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저층부·중층부·고층부로 구분하여 마감재 및 입면 디자인의 변화 유도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색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기조색을 white 중심의 무채색계열과 B, PB, YR, YG 계열 중심으로 사용 보조색은 기조색과 동색계열 중 2-3차 혼합색으로 하여 안정되고 고상한 색감 연출 초점경관으로서 인지성이나 시각적 충격을 연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색이나 강조색을 활용한 다색대비나 색상 대비를 통하여 다양성을 연출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부 : 6m이격 			

(2) 상업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B12~B27		용도	허용용도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점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 -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0호의 교육시설 중 학원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 -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불허용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10층 이하
		배치	• 건물 전면이 도로를 향하도록 건축배치 유도
		형태	•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색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 용도특성상 기초색과 보조색의 색상범위를 넓게 허용 • 기초색의 색조를 제한하여 전체적으로 통일된 색채 이미지연출 : 기초색 채도를 7 이하로 제한 • 강조색은 2개 이하로 제한하고 상가 출입구나 건축물 모서리를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권장 • 초점경관은 보조색이나 강조색을 활용한 다색대비나 색상대비를 통하여 다양성을 연출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부 : 3m이격
		B6~B11 B28~B33	
불허용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600% 이하		
높이	• 20층 이하		
배치	• 건물 전면이 도로를 향하도록 건축배치 유도		
형태	•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색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 용도특성상 기초색과 보조색의 색상범위를 넓게 허용 • 기초색의 색조를 제한하여 전체적으로 통일된 색채 이미지연출 : 기초색 채도를 7 이하로 제한 • 강조색은 2개 이하로 제한하고 상가 출입구나 건축물 모서리를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권장 • 초점경관은 보조색이나 강조색을 활용한 다색대비나 색상대비를 통하여 다양성을 연출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부 : 3m이격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B1~B5, B34, B35		용도	허용용도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점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 -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0호의 교육시설 중 학원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 -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불허용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층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 전면이 도로를 향하도록 건축배치 유도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색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용도특성상 기초색과 보조색의 색상범위를 넓게 허용 기초색의 색조를 제한하여 전체적으로 통일된 색채 이미지연출 : 기초색 채도를 7 이하로 제한 강조색은 2개 이하로 제한하고 상가 출입구나 건축물 모서리를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권장 초점경관은 보조색이나 강조색을 활용한 다색대비나 색상대비를 통하여 다양성을 연출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경계부 : 3m이격 			

(3)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C1, C2		용도	허용용도 (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점, 장의사, 게임 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당구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제외)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직업훈련소 - 제14호의 업무시설
			불허용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층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 전면이 도로를 향하도록 건축배치 유도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색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용도특성상 기초색과 보조색의 색상범위를 넓게 허용 기초색의 색상 : YR, Y 계열 중심으로 사용 기초색의 색조를 제한하여 전체적으로 통일된 색채 이미지연출 : 기초색 채도를 7 이하로 제한 강조색은 2개 이하로 제한하고 상가 출입구나 건축물 모서리를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권장 초점경관은 보조색이나 강조색을 활용한 다색대비나 색상대비를 통하여 다양성을 연출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경계부 : 3m이격 			

(4) 기타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D		용도	허용용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 제1호, 제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점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호의 업무시설(방단면적 합계 3천㎡ 미만)
		건폐율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층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건축계획 수용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건축계획 수용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부 : 3m이격 	

(5) 학교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E1, E2, E3		용도	허용용도(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불허용도(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층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건축계획 수용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색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 지구 특성을 반영한 색상을 기초색으로 채용 - 무채색과 YR 계열의 색채를 사용 - YR, GY, G, PB 계열의 색상을 여건에 따라 사용하여 네치럴한 이미지를 강화 • 건축물 용도를 고려한 색상 채용 - 학교시설은 세대특성을 고려하여 강조색을 활용, 색상대비를 통하여 경쾌한 색상 이미지 강화 • 저채도, 고명도의 색상을 사용하여 공공건축물에서 풍겨 나오는 위압감과 답답함을 해소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부 : 3m이격 			

(6) 유치원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F1, F2	-	용도	허용용도(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
			불허용도(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층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건축계획 수용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색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지구 특성을 반영한 색상을 기초색으로 채용 - 무채색과 YR 계열의 색채를 사용 - YR, GY, G, PB 계열의 색상을 여건에 따라 사용하여 네치럴한 이미지를 강화 건축물 용도를 고려한 색상 채용 - 학교시설은 세대특성을 고려하여 강조색을 활용, 색상대비를 통하여 경쾌한 색상 이미지 강화 저채도, 고명도의 색상을 사용하여 공공건축물에서 풍겨나오는 위압감과 답답함을 해소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부 : 3m이격 			

(7) 문화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G	-	용도	허용용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도서관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를 지상부 연면적의 40%미만에 한하여 허용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점 제외) - 제13호의 운동시설
			불허용도(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층 이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색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지구 특성을 반영한 색상을 기초색으로 채용 - 무채색과 YR 계열의 색채를 사용 - YR, GY, G, PB 계열의 색상을 여건에 따라 사용하여 네치럴한 이미지를 강화 건축물 용도를 고려한 색상 채용 - 대민업무가 많은 공공시설은 입면재료와 연계하여 개방감과 투명성 강화 저채도, 고명도의 색상을 사용하여 공공건축물에서 풍겨나오는 위압감과 답답함을 해소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부 : 3m이격 	

(8) 공공청사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H	-	용도	허용용도 (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바목(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등) -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불허용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층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건축계획 수용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색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지구 특성을 반영한 색상을 기초색으로 채용 - 무채색과 YR 계열의 색채를 사용 - YR, GY, G, PB 계열의 색상을 여건에 따라 사용하여 네쳐럴한 이미지를 강화 건축물 용도를 고려한 색상 채용 - 대민업무가 많은 공공시설은 입면재료와 연계하여 개방감과 투명성 강화 저채도, 고명도의 색상을 사용하여 공공건축물에서 풍겨나오는 위압감과 답답함을 해소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부 : 3m이격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차량 진출입에 관한 사항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A1~A6, B3, B5~B11 B28~B35, C2, E1~E3, F1, 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진출입구불허구간 계획 - 간선가로 및 교차로 일정구간 이내를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설정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도모 	-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1) 차폐조경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①	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저감을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단, 차량·보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6m
②	A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저감을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단, 차량·보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6m
③	A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저감을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단, 차량·보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6m
④	A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저감을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단, 차량·보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6m
⑤	A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저감을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단, 차량·보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6m
⑥	A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저감을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단, 차량·보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6m

(2) 공개공지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⑦	B1	• 폭은 5m 이상으로 설치하며 규모는 군산시 건축조례 제 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이상으로 조성하여 보행공간 확보 및 휴식공간을 제공	위치지정
⑧	B34	• 폭은 5m 이상으로 설치하며 규모는 군산시 건축조례 제 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이상으로 조성하여 보행공간 확보 및 휴식공간을 제공	위치지정

(3) 전면공지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⑨	E1, E2, G, H	• 보행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며 상시 공공에게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함.(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3m
⑩	F1	• 보행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며 상시 공공에게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함.(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3m
⑪, ⑫	C1, C2, E3, F2	• 보행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며 상시 공공에게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함.(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3m
⑬	D	• 보행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며 상시 공공에게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함.(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3m
⑭~⑳	B1~B35	• 보행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며 상시 공공에게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함.(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3m

(4) 담장 및 방음벽

위치	계획내용	비고
A1~A6	•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높이 1.5m 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 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음저감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위하여 목재방음벽, 투명방음벽, 식생형 방음벽 등으로 설치	-
B1~B35	•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 불허	-
C	•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 불허	-
D	•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높이 1.0m 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
G	•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높이 1.0m 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
H	•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높이 1.0m 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

(5) 옥외광고물계획

위치	계획내용	비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 총수는 업소당 2개소 이하로 제한 • 간판 크기는 가로 120cm, 세로 200cm 이하로 제한 (단, 학교, 유치원, 공공청사, 문화시설용지 제외) ※ 간판의 색채, 위치, 글씨채 등은 시행지침 참조 	-

(6)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사항

위치	계획내용	비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p>○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허가권자가 지구단위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기본 취지 및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절차는 이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미만인 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도로의 경우에는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원 및 녹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3.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구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는 5%) 4. 가구면적의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 5.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 6. 건축물높이의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포함) 7.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나. 지구단위계획에 합벽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다.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건축선의 1m 이내의 변경인 경우(획지계획의 변경에 따른 건축선의 이동은 건축선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9.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10.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장 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 및 보행자출입구의 추가설치 1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으로서 대지내 전면공지, 공개공지 및 통경축의 신설, 폐지 및 위치변경, 다만 통경축은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통경축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2.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13.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14.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15.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16.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

II.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승인 고시도면 : 게재 생략

※ 군산시 도시계획과(☎063-454-3503)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군산시 고시 제 2015 - 61 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08-417(2008.4.2)호로 승인 고시한 군산시 지곡동 산 66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주택법 제16조 9항 및 12항과 같은법 제93조 규정에 따라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4월 08일

군 산 시 장

1. 사업계획승인 취소 대상의 사업개요

- 가. 사업계획승인일 : 2008년 4월 2일(2008 - 1호)
- 나. 건축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산 66번지의 40필지
- 다. 건축규모 : 아파트 8동, 지상 14~18층, 496세대
- 라. 사업주체 : 주식회사호산건설 대표 서정근
- 마. 시 공 자 : 주식회사신도종합건설

2. 취소내용 및 사유

- 가. 처분의 내용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취소
- 나. 취소의 사유 : 주택법 제16조 9항을 위반하여 취소일 현재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음에 따라 같은법 제16조 12항 및 제93조 규정에 의거 승인을 취소함.

군산시 고시 제 2015-63 호

도로명주소(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04. 15.

군 산 시



○ 도로명주소 부여 : 12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폐지 :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5-551호]

2015년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 시행공고

우리시 관내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를 통한 재선충병 피해 확산 예방 및 청정지역 목표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훈증·파쇄·소각)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제5항 및 「산림보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5년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5일

군 산 시 장

방 제 일 시	방 제 지 역	병해충 종 류	방제방법 및 내용	방제지역 내 금지사항
2015.04.05. ~ 방제완료시	○ 군산시 화현 옥산면 (세부내역 불임참조)	소나무 재선충병	○ 소나무류(고사목, 피해목 등) 제거 등	다음사항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감염입목 및 원목의 이동. 2.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 공고기간 : 2015. 04. 05. ~ 2015. 04. 20.

● 불 임 : 사업 대상지 필지별 조서 1부

※ 공고 기간 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승낙으로 간주하여 일괄 사업 추진할 계획이오니, 방제사업에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신 기관,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보호계(☎063-454-29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